

〈書 評〉

Jahrbuch des öffentlichen Rechts der Gegenwart

(Neue Folge, Bd. 11~13)

二次大戰以後 1951 年に Jahrbuch des öffentlichen Rechts der Gegenwart가 續刊된 뒤 어느덧 第 14 卷이 出刊되었다. 이 「現代公法年報」는 續刊 1 卷(Neue Folge, Bd. 1)이 Leibholz 教授와 v. Mangoldt 教授에 의하여 編輯되었고, 第 2 卷도 이 兩教授에 의하여 編輯되었으나 v. Mangoldt 教授의 死後에 刊行되었다. 第 3 卷부터는 Leibholz 教授에 의해서 編輯되고 있으나 編輯方針은 過去와 같이 世界各國의 公法の의 發展經過를 報告하며 公法에 관한 論文 등을 收錄하고 있다. 이 Jahrbuch des öffentlichen Rechts der Gegenwart의 Neue Folge는 現代世界各國의 公法の의 發展傾向과 動態를 아는데 있어서 가장 貴重한 文獻의 하나이라고 하겠다. 現在 法大圖書館에 第 10 卷까지가 備置되어 있으나, 그 以後에 나온 年報는 아직 備置되지 않았기에 그 內容을 簡單히 紹介하고 重要한 몇 論文에 관해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I.

(i) 第 11 卷은 憲法裁判을 特輯하고 있다. Kapur 大法官이 印度最高裁判所에 관하여 英語로 發表했고, Bern 大學의 Hans Huber 教授가 憲法裁判所로서의 瑞西聯邦裁判所의 1945 年에서 1961 年까지의 判決을 獨語로 報告했고, Istanbul 의 Azrak 助敎가 土耳其의 憲法裁判에 관하여 獨語로 說明했고, Columbia 大學의 Kirchheimer 教授가 美國의 憲法解釋의 原則을 獨語로 論했고, Georgetown 의 Antieau 教授가 刑事裁判의 管理의 保護에 있어서의 美國最高裁判所의 役割을 英語로 記述하고 있으며, 西獨聯邦裁判所의 部長判事인 Geiger 教授가 基本法에 관한 聯邦裁判所의 判決을 整理하고 있다. 이 中에서도 Geiger 教授의 論文, Huber 教授의 論文과 Kapur 大法官의 論文이 憲法判例에 관한 많은 資料를 提示해 주고 있다.

報告部에서는 獨逸法部門에서는 Göttingen 의 Kötting 教授가 獨逸行政에 대한 聯邦의 影響과 聯邦固有의 行政組織에 대해서 論하고, Kleinrahm 氏가 Nordrhein-Westfalen 支邦의 憲法과 憲法現實에 대해서 報告를 하고 있다. 外國法部門에서는 California 大學의 Aikin 教授가 議會政府와 責任政府에 대하여 美國의 經驗面에서 英語로 論하고, Soe 氏가 Burma 의 憲法發展에 대한 英文報告를 行하고 있고, Wien 의 Pfeifer 教授가 1945 年 以後의 奧地利의 政黨과 議會에 관해서 解說하고 있다. 이 報告部에서는 Pfeifer 教授의 報告가 二次戰後의 奧

地利的 憲法現實을 잘 說明해 주고 있으며, Kleinrahm 氏의 Nordrhein-Westfalen 支邦憲法の 解說이 有益하며, 資料로 該支邦憲法全文이 실려 있다.

(ii) 第 12 卷은 OECD 의 構造와 課業에 關한 Hahn 法律顧問의 글을 卷頭에 실고 있으며, 世界各國의 公法의 發展相을 紹介하고 있다. Köln 大學의 Spitaler 教授는 戰後 西獨의 稅法의 一般的 發展傾向을 論했고, Camphausen 氏는 1905 年에서 1962 年間的 佛蘭西의 教會와 國家의 關係에 關한 論文을 發表하였다. 憲法裁判에 關해서는 Buerstedde 氏가 佛蘭西第五共和國 憲法에 따른 憲法委員會에 依한 立法權의 統制를 論하고 있으며, Turin 大學의 Pierandrei 教授가 Italy 에서의 憲法解釋의 原則을 發表하고 있다. 聯邦制度에 關해서는 奧地利의 聯邦制度를 Innsbruck 大學의 Ermacora 教授가 執筆하였고, 蘇聯의 聯邦制度에 대해서는 Belz 氏가 執筆하고 있다.

世界各國의 憲法紹介로는 Göttingen 大學의 Schultz 教授에 의한 1940 年 以後의 발틱 三國의 憲法發展의 紹介가 있고, 1960 年의 체코슬로바키아憲法에 대한 Rabl 氏의 紹介가 있고, Duke 大學의 Cole 學長의 1960 年 Nigeria 聯邦獨立憲法英文紹介가 있으며, 慶熙大學校의 尹謹植 教授에 의한 1948 年 以後의 韓國憲法發展史가 收錄되어 있다.

이 第 12 卷은 內容이 相當히 多彩로우며 蘇聯과 그 衛星國家의 憲法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이 特色이며 발틱三國憲法이며 체코憲法, 나이지리아憲法과 韓國憲法 등이 資料로 收錄되어 있다.

(iii) 第 13 卷은 外國憲法の 報告를 特輯하였다. 卷頭論文은 Löwenstein 教授의 1955 年에서 1964 年間的 美國의 國家政策과 憲法이다. 다음이 Aikin 教授의 National Federalism 에 關한 英文論文이고, Yardley 氏의 英國憲法과 法의 支配에 關한 紹介가 있고, Köln 의 Newman 教授의 Pakistan 의 成立과 憲法發展에 關한 論文이 게재되었고, 유우고슬라비아學術院會員인 Krbek 教授의 1964 年 유우고슬라비아憲法에 關한 論文이 있고, Ankara 大學의 Ibadan 教授에 의한 1961 年 터키憲法紹介가 있으며, Helsinki 大學의 Kastari 教授의 基本權保障과 憲法原則이란 英文論文이 있으며, 끝으로 1945 年에서 1963 年間的 東獨法秩序의 發展에 關한 Mampel 辯護士의 報告가 실려 있다.

第 13 卷에서도 그 前卷과 같이 資料로서 Pakistan 憲法, Yugoslavia 憲法, Turkey 憲法, 東獨憲法들이 게재되어 있다. 이 卷에서는 新生國家의 憲法들이 우리의 關心을 돌우고 있으며, Löwenstein 教授의 美國憲法에 關한 論文이 重要視된다.

以上 第 11 卷에서 第 13 卷까지의 所收論文中 重要的 論文을 體系的으로 分類해서 좀 詳細히 보기로 한다.

II.

(i) 美國憲法の 發展傾向을 詳細하게 記述한 것은 第13卷에 있는 Löwenstein의 Staatspolitik

und Verfassungsrecht in den Vereinigten Staaten 1955~1964 (SS. 1~116)이다. 이 論文은 Löwenstein의 Staatspolitik und Verfassungsrecht in den Vereinigten Staaten 1933 bis 1954 (Neue Folge, Bd. 4, SS. 1~154)의 續篇이다.

第 4 卷에서 Löwenstein 教授는 第 1 部에서 憲政史의 考察을 하고 第 2 部에서 憲法의 個別 問題를 다루고 있었다. 第 1 部에서 Roosevelt 의 New Deal 政策에서 始作하여 第二次大戰中の 憲法을 論하고, 나아가 Truman 의 Fair Deal 政策을 說明하고, 冷戰期의 憲法이며 國家政策을 잘 說明해 주었다. 第 2 部에서는 國家領域의 問題며, 大統領과 大統領職, 議會와 立法機能, 大統領과 議會의 權力關係, 最高裁判所와 憲法 등에 관해서 憲法規範學的인 面에서와 國家政策의 面에서 잘 說明해 주고 있었다. 이 第 4 卷의 續篇이 第 13 卷의 論文이나 그 途中에 發行된 Löwenstein 의 著書를 여기서 紹介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Löwenstein 은 1959 年에 Verfassungsrecht und Verfassungspraxis der Vereinigten Staaten 이라는 美國憲法教科書를 獨逸에서 發行하였다. 이 책은 大陸的인 法學教育을 받은 사람이 美國憲法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教科書라는 評을 받고 있다. Löwenstein 의 이 美國憲法教科書는 第 1 部에서 美國民主政治의 基礎라고 해서 美國憲政史를 簡單히 다루고, 憲法의 變遷과 改正, 國家領域, 國民, 聯邦國家的組織, 選舉法과 選舉節次, 政黨에 대해서 說明하고, 第 2 部에서는 聯邦의 國家機關을 取扱하고 있는데 下院, 上院, 議會의 活動範圍, 大統領 選舉와 選舉節次, 大統領職의 機能, 大統領制의 技術, 大統領과 議會의 關係에 대해서 論하고, 第 3 部에서는 聯邦司法을 다루고 있으며, 法院組織과 法官制度, 違憲立法審査權, 聯邦裁判所의 管轄權 등을 解說하고, 第 4 部에서는 基本權을 主題로 하여 自由權의 正常機能, 自由權과 國家安全保障, 自由權과 黑人等을 取扱하고 있다. 이러한 美國憲法論의 著述도 그의 憲法論(Verfassungslehre)의 方法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Jahrbuch 第 13 卷의 Löwenstein 의 論文은 第 4 卷의 論文의 續篇인 同時에 이 美國憲法論의 Supplement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第 1 章에서는 政黨政治의 動態를 說明하고 있는데 1956 年과 1960 年의 大統領選舉와 國會議員選舉, 選舉法問題 등을 取扱하고 있다. 第 2 章은 聯邦國家的秩序의 問題로서 領土問題와 聯邦執行(Bundesexekution), 選舉區의 再分割 등을 다루고 있다. 第 3 章에서는 大統領과 政府를 다루고 있는데 政府의 組織, 大統領 領導制의 社會學, 大統領職의 人物交替 등을 論及하고 있다. 第 4 章에서는 上·下院이며 立法과 法案, 大統領과 議會의 關係에 대해서 說明하고 있다. 第 5 章은 聯邦司法府에 관한 것으로 組織問題와 人物問題, 最高裁判所의 判例 特히 國家安全保障과 共產主義 등을 取扱하고 있다. 第 6 章은 黑人問題로서 黑人의 平等問題와 1963 年의 黑人暴動問題 등이 다루워지고 있다.

Löwenstein 의 이 三部作은 一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獨逸憲法學者로서의 法學的思惟와 美國政治學教授로서의 政治的考慮며 社會學的評價가 三位一體를 이룬 現代美國憲法을 理

解하기 위하여 必須不可缺한 著作이라고 하겠다. 다만 한 가지 不滿이 있다면 그의 Verfassungslehre에 있어서와 같이 基本權에 關한 것이 너무나 소홀히 다루워지거나 않았는가 하는 點이다. Löwenstein은 憲法의 動態인 面을 重視하고 政策決定, 政策執行, 政策統制의 面을 重視하는 나머지 靜態的인 面을 看過하는 傾向이 있거나 않을지 우려된다. 動態的인 面을 強調한 黑人의 人權問題 등은 教科書의 다른 基本權問題에 比해서 過重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이것은 Monographie에 屬한다고 하겠다).

Löwenstein의 論文外에도 Aikin 教授의 美國憲法에 關한 論文이 있다. 그러나 이 論文은 政治學的인 面에서 다루워진 것으로 制度的 考察로서의 價値는 있으나 憲法規範學的 價値는 적다고 하겠다. Kirchheimer 教授의 論文은 憲法裁判에 關한 것으로 價値있는 論文이다.

(ii) 東歐陣營은 第2次戰直後에 各己의 憲法을 制定하였으나 1960年代에 들어 憲法制定 또는 改正에 의하여 憲法의 代替가 行해지고 있다. 이것은 Chruschtschow 執權以來의 蘇聯의 新憲法制定意圖와도 一聯의 聯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蘇聯憲法이 無產階級的 獨裁를 謳歌하던 것이 第22次共產黨大會以後에는 「全國民의 國家」로 國家形態가 變遷되었고 民族國家의 解體를 통한 單一國家에의 指向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傾向을 Lothar Schultz 教授는 蘇聯邦에 編入된 Estland, Lettland, Litauen 三國의 憲法發展의 例를 들어 說明해 주고 있다(Die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n baltischen Staaten Estland, Lettland, Litauen seit 1940, N.F. Bd. 12, SS. 295~352). 그는 이 三小國의 憲法의 新傾向으로서 經濟管理의 地方分散, 蘇聯邦法務部의 解體와 地方分散, 財政權의 地方分散 등으로 蘇聯의 中央集權制의 緩和를 報告하고 있으며, 地方行政組織의 改編 등을 說明하고 있다.

1960年 7月 11日에 체코슬로바키아憲法이 새로이 制定되었는데 이것을 Rabl 博士가 紹介하고 있다(Die tschechoslowakische Verfassungsurkunde vom 11. Juli 1960 in Theorie und Praxis: Neue Folge Bd. 12. SS. 353~416). 체코憲法에 관해서는 이미 Rabl 博士에 의하여 第8卷에 報告된 바 있는데 (Die verfassungsrechtliche Entwicklung der Tschechoslowakei seit 1945/45 S. 293 ff.) 이는 그 續篇이라고도 하겠다. 그는 체코憲法의 全面改正이 中央管理計劃經濟의 失敗와 1948年 5月 9日 憲法以後의 社會政策的 變遷이 새로운 憲法의 定義를 強要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特히 新憲法의 法文과 實際의 相克點을 잘 解剖하고 있다. 체코憲法은 아직도 勞動者農民의 獨裁, 國民議會에의 權力集中 등을 規定하고 있으며 事實上에 있어서는 共產黨의 獨裁임을 明白히 하고 있다.

유우고슬라비아의 舊憲法에 대해서는 Schultz 教授가 第7卷에서 批判的인 紹介를 했었는데 第13卷에서는 1964年 4月 7日의 新유우고슬라비아憲法에 대해서 Krbek 教授가 유우고슬라비아 立場에서 이를 說明하고 있다. 新유우고슬라비아憲法은 긴 前文과 257條에 達하는 長文의 憲法으로서 印度憲法에 다음 가는 詳細한 憲法이 되고 있다. 新유우고슬라비아憲

法은 人民共和國의 段階에서 社會主義國家로의 發展을 매듭진 憲法이라고 그는 말하고, 新憲法은 舊憲法과 같이 國家權力的 組織規範임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自由로운 人間을 出發點으로 하는 全社會秩序의 規律이 그 目的이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自治行政을 認定하고 있다고 한다. 憲法の 體系를 보면 前文이 憲法の 根本原則을 說示하는 形式으로 規定되어 있고, 第1部가 全유우고슬라비아의 社會的 政治的 秩序를 規定하고 있는데 이 部分이 가장 特色이 있으며, 第2部에서 聯邦의 組織을 規定하고 있다. 그는 新憲法の 章別로 詳細한 說明을 하고 있는데, 第1章은 總則規定으로 유우고슬라비아가 아직도 勞動者의 權力 위에 根據하는 社會主義的 民主的共同體임을 規定하고 있고, 第2章은 社會經濟的 秩序를 規定하고, 第3章에서는 人間과 市民의 自由와 權利와 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는 自由主義國家에 있어서의 諸權利가 文書上 認定되고 있으며, 勞動의 權利, 勞動의 自由 등이 歐歌되어 있고, 職業選擇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다. 基本權은 剝奪하거나 制限할 수 없도록 하고 立法에 의한 侵害도 憲法裁判所에서 救濟될 수 있게 하고 있다. 第4章은 社會政策的體系로서 自治行政을 全社會政策的體系的 根本原則으로 看做하고 있다. 第5章은 社會政策的共同體로서 市邑面, 道, 社會主義共和國, 聯邦 등을 規定하고 있다. 第6章은 司法制度와 檢察制度를 規定하고 第7章은 立憲主義와 法治主義의 原則을 規定하고 違憲立法審查制度를 두고 있다. 第9章은 聯邦國會에 관해 規定하고, 第10章은 聯邦大統領, 第11章은 聯邦執行機關과 行政機關, 第12章은 聯邦最高裁判所를, 第13章은 憲法裁判所를, 第14章에서는 國防과 人民軍에 대한 規定을 두고 있다. 유우고슬라비아新憲法은 美辭麗句로 羅列된 實現性이 不足한 理念的 綱領的 憲法으로 그칠 公算이 크나, 그것이 獨創的인 憲法이고 많은 憲法の 長點을 모은 意味에서 一顧의 價値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注目하여야 할 것은 東獨의 憲法發展을 Mampel 講師가 著述한 報告이다(Die Entwicklung der Verfassungsordnung in der Sowjetzone Deutschland von 1945 bis 1963, Neue Folge, Bd. 13. SS. 455~579). Mampel 辯護士는 Marx-Lenin 主義國家論을 說明한 다음에 東獨의 憲法發展을 反파쇼·民主主義的 段階와 人民民主主義的 段階로 區分하여 잘 說明하고 있다. 獨逸降服後 分割占領과 1949年 10月 7日의 憲法制定과 憲法規範과 憲法現實의 關係를 說明하고, 1950年까지의 發達을 第一段階로 그는 보고 있다. 1951년부터 第二段階가 始作되는데 그는 1951年의 5個年計劃의 實施와 함께 일어난 民主的 中央集權制의 導入, 社會主義統一黨의 優越, 蘇聯占領軍과의 關係, 防衛義務 등을 說明하고 있다. 公權力的 組織의 發展과 機關의 管轄權의 變遷 說明에서 國民代表機關의 意義變遷과 管轄變更, 大統領職의 廢止에 따른 國家評議會의 設置, 國務會議, 國家防衛會議, 立法, 其他的 公權力的 組織, 司法 등을 取扱하고 있다. 그리고 公權力機關과 國民間의 關係에 대해서 國民의 基本權이 前國家的인 基本權이라는 것이 認定되지 않고, 基本權의 法律에 의한 制限이 行해지고 있다고 말

하고 있다. 東獨에서는 基本權自體도 社會主義의 人格權의 性格을 가지며 그 本質에 따라 政黨政策과 國家政策의 意義에서만 이를 行使할 수 있고, 또 그 限度內에서 行使에의 義務가 成立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法律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은 금기야는 基本權의 否認에 이르는 點을 強調하고 있다.

(iii) 亞細亞地域의 憲法發展에 관해서는 1957 年의 Malaya 聯邦憲法이 第 9 卷에 報告된 바 있고 (Sheridan;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tion of Malaya of 1957, Bd. 9, SS. 297~316), 1947 年의 印度憲法에 대해서는 第 4 卷에 이미 報告된 바 있었다(Pylee; The Constitution of India of 1949, Bd. 4, SS. 155~254). 그런데 第 11 卷에서 第 13 卷까지는 亞細亞地域憲法에 관한 여러 報告가 실려 있는 것이 또 하나의 特徵이다.

Burma 憲法の 發展에 관한 Soe 辯護士의 論文 (Soe, The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 Burma Bd. 11, SS. 365~415)은 가까운 亞細亞地域의 憲法에 無關心하기 쉬운 우리에게 亞細亞地域의 憲法發展의 한 모습을 說明해 주는 좋은 論文이라고 하겠다. 이 Burma 憲法の 發展에 관한 報告는 前半에는 憲政史의인 考察을 하고, 後半에서는 大統領, 聯邦政府, 聯邦議會, 聯邦司法, 其他 憲法の 重要한 規定 등을 說明하고 있으므로 舊 Burma 憲法の 理解에 좋은 資料가 되고 있다. Burma에서는 憲法裁判所가 따로 없으며 最高裁判所가 Rangoon에 設置되어, 最終審을 擔當하고 있으며 憲法의 問題에 대한 意見을 大統領이 要請하는 경우에는 意見을 發表할 수 있는 助言의 權限을 가지고 있었다. 政府는 連帶責任을 지며 首相이 辭職하면 全內閣이 辭職하는 英國式內閣責任制度를 取하고 있다. Burma에 있어서 基本權은 執行權에 대한 限界로서 規定되었을 뿐 아니라 立法權에 대한 限界로서 規定되고 있었다. 버마의 基本權規定은 印度憲法制定會議當時의 諮問委員會의 勸告를 그대로 規定한 흔적이 濃厚하다. 이 Burma 憲法은 1962 年 3 月 1 日 深夜의 쿠우데타에 의한 革命委員會에 의하여 많이 變遷되었음을 報告하고 있다. 軍事革命에 의하여 憲法의 變革이 잦은 것은 亞細亞地域의 한 特色이라고도 하겠다.

軍事政權에 의하여 制定된 1961 年 7 月 9 日의 터어키憲法에 관해서는 第 13 卷에 Abadan 教授가 詳細한 解説을 하고 있다. 터어키憲法도 그 동안 많은 變遷이 있었다. 1960 年까지의 터어키憲法에 관한 發展은 第 9 卷에 실려 있다(Abadan, Die Entstehung der Türkei und ihre verfassungsrechtliche Entwicklung bis 1960, Bd. 9, SS. 353~422). 第 9 卷에서 Abadan 教授는 터어키憲政史를 說明하고 1924 年의 憲法에 관해서 詳細한 解説을 하고 있다. 이 解説은 革命前의 것이고, 1960 年 6 月 12 日의 터어키共和國臨時憲法은 이 1924 年 憲法의 規定을 廢棄하거나 改正하고 있다.

Abadan 教授는 (Abadan, Die türkische Verfassung von 1961, Bd. 13, SS. 325~436) 터어키憲法을 自由世界에 있어서는 가장 現代的인 基本法이라고 보고 있으며, 1961 年 터어키憲

法の 本質的 要素는 터키共和國이 人權에 根據하는 民族的 民主的 非宗教的 社會的 法治 國家라는 規定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터키憲法前文은 쿠우데타의 正當性을 國民의 抵抗權行使에서 求하고 있으며, 國民의 抵抗權을 認定하고 있다. 나아가 民族的 超黨 的인 政策의 原則을 宣言하고 있다고 그는 보고 있다. 터키憲法의 重要한 特色의 하나는 基本權保障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터키憲法의 基本權規定은 Jellinek의 學說에 따라 基本權을 消極的地位, 積極的地位, 能動的地位의 三樣態로 體系化하고 있다고 한다. 基本權은 A. 一般規定(10~13) B. 個人의 權利와 義務(14~34) C. 社會的 經濟的 權利와 義務(35~53) D. 市民의 政治的 權利와 義務로 區分되고 있다. 이 基本權規定은 Abadan教授의 말과 같이 自由世界에 있어서는 模範的인 現代의 規定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西獨基本法의 基本權 規定에서 많은 影響을 받았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憲法裁判所制度의 設置, 司法權의 獨立 保障, 選舉制度改正, 自治制度擴張 등에 劃期的인 發展을 보이고 있다. 1961年의 터키憲法이 理想的·綱領的 憲法으로서 西方側憲法의 模範이 되고 있는데 比해서 1962年에 制定된 韓國憲法은 어느 程度의 落後性을 免할 수 없다. 1962年의 第三共和國憲法에 대한 詳細한 紹介는 아직 年報에 報告되지 않았으나 憲法의 英譯文은 第12卷에 실려 있다. 이에 앞서 尹謹植 教授의 韓國憲法의 發展史가 收錄되어 있다 (Yun, Die Verfassungsentwicklung der Republik Korea seit 1948, Bd. 12, SS. 461~491). 尹教授의 韓國憲政史論文은 獨語로 된 最初의 것으로 우리 憲政史를 獨逸學界에 紹介했다는 데에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韓國의 法律 文化나 政治經濟에 대한 것을 韓國人이 紹介하여야만 하는 任務에서 보아 尹教授의 이 論文과 그의 Dissertation은 韓國憲政史의 紹介라는 面에서 그 意義를 찾아야 할 것이다. 尹教授는 그의 指導教授인 Göttingen大學의 Seidel教授의 影響을 받아 社會的 經濟的 側面에서 憲政史를 다루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第1節에서 社會的 背景을, 第2節에서 憲法의 成立史를, 第3節에서 1948年 7月 12日의 憲法을, 第4節에서 憲法現實을, 第5節에서 4月革命과 憲法改正을, 第6節에서 結論을, 第7節에서 補遺를 다루고 있는 이 論文은 政治學的 側面에서 韓國憲法의 變遷을 要領있게 說明해 주고 있다. 第1節과 第2節은 憲法成立까지의 政治·經濟史의 面이 다루워져 있고, 第3節에서는 制憲憲法의 內容을 說明하고 있으나, 憲法의 基本理念이며 外國憲法의 影響, 基本權保障의 意義 등이 소홀하게 다루워졌고, 法律技術用語의 不適當한 使用이 눈에 띈다. 第4節의 憲法現實은 憲法現實의 變遷과 憲法改正을 다룬 것이며 自由黨治下의 憲政史를 다루고 있다. 第5節의 4月革命과 憲法改正에서는 4月革命의 經過를 比較的 詳細히 說明하고 憲法改正에 言及하고 五·一六軍事政權과 非常措置法에 觸 及하고 있다. 第7節에서는 第5次 憲法改正에 言及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詳細한 說明이 없다. 第6節에서는 韓國의 民主政治를 實現하는 路에 대한 尹教授의 意見이 反映되어 있는 데, 이에 產業化와 啓蒙이 必要하다고 보고 있다. 啓蒙은 成人에게는 民主主義의 思惟를

가까이 하게 하고 住民에게는 예수 크리스트의 사랑에 根據하는 人間主義를 注入하는데 目的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宗教的啓蒙이 國家權力에 의해서 行해지는 경우 政教分離를 規定하고 있는 憲法에 違反될 것이며 또 博愛나 人間主義가 크리스트의 사랑에만 根據하는 것인지 一沫의 疑問이 있다. 이 論文은 憲法의 規範的面을 너무나 輕視한 點, 若干의 獨斷的인 判斷을 내리고 있는 點과 法律用語의 混同이라는 弱點을 가지면서도 外國에 韓國 憲法의 歷史를 紹介했다는 功獻이 크다고 하겠다.

(iv) 이 외에도 獨逸憲法의 發展이며 憲法裁判所制度, 人權에 관한 判例 등을 紹介하고 評해야 할 많은 論文이 있으나 許容된 紙面을 超過하였기에 後日로 미루기로 한다.

〈金 哲 洙 서울法大 助教授〉